

<붙임>

**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내역**

(단위 : 백만원, %)

보고유형	신규		
대주주명 및 관계	이정엽*/ 임원(등기이사)		
신용공여의 주체 및 형태	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/ 금전 대여	신용공여개시일	2023.06.12. 임원 신용공여로서의 효력 발생일, 2026.03.31.(이사 선임일 이후)**
		신용공여종료일	2026.06.11. (최대 10년까지, 1년마다 재연장)
신용공여 약정금액	90	신용공여 법정한도	100
금리 (수수료)	4.6%	주요 특별약정	-
담보의 종류 (평가액)	-	자금용도	복리후생
신용공여 합계액 (잔액기준)	90 ( 90 )	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	76,313 (기준일 : 2025.12.31.)

\* 이정엽은 (주)머스트자산운용의 대주주가 아닌 등기이사(임원)에 해당하는 자로서,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로 분류됨. 당사의 대주주는 (주)머스트홀딩스(지분율 100%)이며, 이정엽은 (주)머스트홀딩스와 직접적인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지 않음.

\*\* 동인은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됨에 따라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, 이사 선임 이전에 제공된 기존 대출(최초 대출 실행일: 2023.06.12.)에 대하여 이사회 사전 승인(2026.03.26.)을 득하였음.

### 기재상의 주의

1. 신용공여액은 법 제34조제2항을 기준으로 작성
2. 신용공여의 형태는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형태를 작성
2. "비율"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
3. 신용공여합계액은 신용공여합계액을 한도기준으로 기재하고 ( )내는 잔액기준으로 기재

### ■ 첨부서류

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